

NHe편한암보험

|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약관 | 판매월 2026.01

 NH농협생명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 Guide Book



※ 同 Guide Book은 보험약관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주요내용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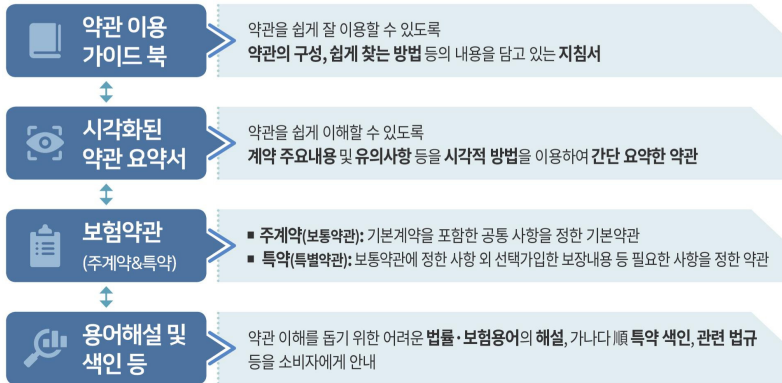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 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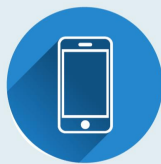
2

한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3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QR(Quick Response) 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 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주계약 해약환급금 보증형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등을 안내드리오니,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한 사항

- | | | |
|------------------------|------|--|
| ①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P.32 |  |
|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P.34 | |
| 제8조(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P.37 | |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등」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철회

- | | | |
|----------------|------|--|
| ② 제20조(청약의 철회) | P.46 |  |
|----------------|------|--|

계약 취소

- | | | |
|-----------------------|------|--|
| ③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P.48 |  |
|-----------------------|------|--|

계약 무효

- | | | |
|----------------|------|--|
| ④ 제22조(계약의 무효) | P.50 |  |
|----------------|------|--|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 효과

- | | | |
|-------------------------|------|--|
| ⑤ 제1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P.42 |  |
|-------------------------|------|--|

보험료 연체 및 해지

- | | | |
|---|------|--|
| ⑥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P.59 |  |
|---|------|--|

부활(효력회복)

- | | | |
|--|------|--|
| ⑦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P.60 |  |
|--|------|--|

해약환급금

- | | | |
|-------------------|------|--|
| ⑧ 제3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P.62 |  |
| 제36조(해약환급금) | P.63 | |

보험계약대출

- | | | |
|----------------|------|--|
| ⑨ 제37조(보험계약대출) | P.64 |  |
|----------------|------|--|

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팁

아래 7가지 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시각화된 **쉽게 이해하는 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P.7

②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 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체크항목 P.5

③

가나다 순 특약 색인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특약에 한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색인 P.22

④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보험용어해설, 약관본문 박스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용어해설 P.23

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P.4

⑥

관련법규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⑦

약관 조항 등이 **음영, 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6

기타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 내맘같은 고객센터 (**1544-4000**)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 보험상품명 : NHe편한암보험(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 보험상품의 종류 : 건강보험

01. 상품의 주요 특징

- 가입금액 4천만원 가입 시 암보장금액 최대 8천만원까지 보장.
- 9대 고액암 진단시 암진단보험금(1),(2),(3) 모두 지급

0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NHe편한암보험(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 ① **암보험** : 암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② **e** : 홈페이지 및 모바일 등을 통해 셀프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 ③ **갱신형** : 보험계약 **갱신시**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④ **무배당** :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⑤ **간편가입형** :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건강체 가입자의 경우 간편심사보험이 일반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주의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면책기간 적용담보**

면책기간

보험금
미지급

구분	담보명	면책기간
주계약	암진단보험금(1) 암진단보험금(2) 암진단보험금(3)	가입후 90일간 보장 제외

민원 사례

A씨는 **암보험 가입후 2개월**이 지나서 **위암**을 판정받아 보험회사에 **암진단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㉞ 감액지급

이 보험에는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 감액지급 적용담보

감액지급
50%
[1년 이내]

구분	담보명	감액기간 및 비율
주계약	암진단보험금(1) 암진단보험금(2) 암진단보험금(3) 소액암진단보험금	가입후 1년 간 보험금 50% 지급

㉞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보장한도 적용담보

보장한도
최초 1회한

구분	담보명	보장한도
주계약	암진단보험금(1) 암진단보험금(2) 암진단보험금(3) 소액암진단보험금	각 최초 1회 에 한해 보장

0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주의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03.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이 보험에는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 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계약

NHe편한암보험(갱신형, 무배당)

04.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① 보장성보험



주의

- ① 이 보험은 암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②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② 유병력자보험



주의

- ① 이 보험의 1형(간편가입형)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소비자**가 간단한 심사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② 일반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③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주의

- ①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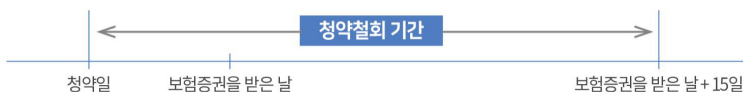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 약관] 46 p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주의

- ① **청약일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
-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가 체결한 계약**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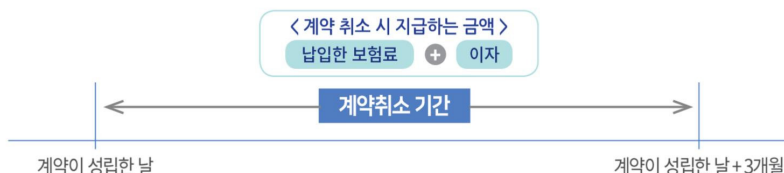
[주계약 약관] 48 p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03. 보험계약의 무효

[주계약 약관] 50p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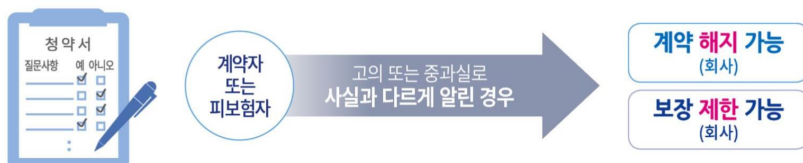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 1형(간편가입형)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원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한 경우

04.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주계약 약관] 41,42p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주의

-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민원 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 지식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05.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주계약 약관] 59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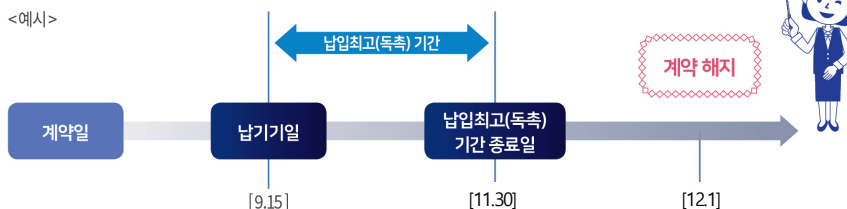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예시>



㉠ **납입연체** : 제2회이후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06.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주계약 약관] 60 p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07. 보험계약대출

[주계약 약관 64 p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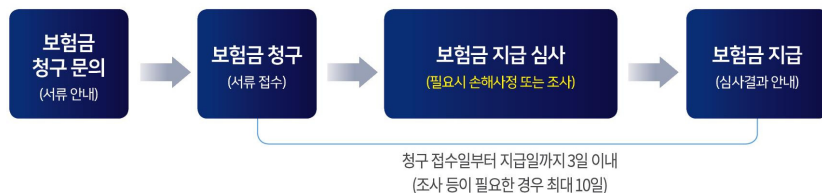
환급금 내역서				
해약환급금	공제금액			실 수령액
	대출원금	이자	계	
1,000 만원	500 만원	5 만원	505 만원	495 만원



08.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 약관] 38p

-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접 수 처
방 문	전국 농축협 지점, NH농협은행 지점, NH농협생명 지점
우 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서울마포우체국 사서함 13호 NH농협생명 지급심사정보입력팀(미래) (우 04156)
팩 스	사고보험금 02)6971-6040 분할보험금 02)6971-6060
홈페이지	http://www.nhlife.co.kr > 고객센터 > 보험가이드 > 사고보험금 청구

※ 문의 : NH농협생명 내말같은 고객센터 1544 - 4000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필수) 서류

-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 청구인(수익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내방인 신분증 (대리 청구 시)
- 청구인(수익자) 통장사본(단, 수익자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경우 제외)
-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서류

- 암진단 시 : 암진단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진단서 등
 - 재해사망 시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재해입증서류*, 사망사실이 확인된
기본증명서등 청구서 (당사양식)
 - 장해진단 시 : 약관에 의거한
장해진단서
- * 재해입증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19
응급구조일지 등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CONTENTS

01	가나다순 특약 색인	22
02	보험용어 해설	23
03	보험약관	

NHe편한암보험 |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주계약 약관 [1형(간편가입형), 2형(일반가입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5
제1조	【목적】	25
제2조	【용어의 정의】	25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8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28
제4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31
제5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32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32
제7조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4
제8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7
제9조	【보험금 등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38
제10조	【보험금 등의 청구】	38
제11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38
제12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39
제13조	【주소변경통지】	40
제14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41
제15조	【대표자의 지정】	41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41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41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42
제18조 【사기에 의한 계약】	44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44
제19조 【보험계약의 성립】	44
제20조 【청약의 철회】	46
제21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48
제22조 【계약의 무효】	50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51
제24조 【계약의 갱신】	52
제25조 【보험나이 등】	54
제26조 【계약의 소멸】	55
제5관 보험료의 납입	56
제27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56
제28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58
제29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58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59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60
제32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61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62
제3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62
제33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62
제34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63
제3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63
제36조 【해약환급금】	63
제37조 【보험계약대출】	64
제38조 【배당금의 지급】	64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64
제39조 【분쟁의 조정】	64

제40조 【관할법원】	67
제41조 【소멸시효】	67
제42조 【약관의 해석】	68
제43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68
제4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68
제45조 【개인정보보호】	69
제46조 【준거법】	72
제47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72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74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79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80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81
[별표 5]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제외)	82
[별표 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83
[별표 7] 9대고액암 분류표	84
[별표 8]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88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89
제1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89
제2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89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90
제3조 【적용대상】	90
제4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90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90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90
제6조 【보험금의 청구】	90
제4관 기타사항	91
제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91

특별조건부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92
제1조 【목적】	92
제2조 【용어의 정의】	92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92
제3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92
제4조 【피보험자의 범위】	93
제5조 【특약의 내용】	93
제6조 【특약부가의 조건】	93
제7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94
제8조 【특약의 보험기간】	95
제3관 보험료의 납입	95
제9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95
제10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95
제4관 특약의 해지	95
제1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95
제5관 기타사항 등	95
제12조 【해당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95

특정 신체부위 · 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약관

제1조 【특약면책조건의 내용】	96
제2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98
제3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98
제4조 【해당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99
[별표 1] 특정부위분류표	100
[별표 2] 특정질병분류표	102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적용범위】	105
제2조 【제출서류】	107
제3조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108
제4조 【전환의 취소】	109
제5조 【해당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09

별첨①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고객권리 안내문	110
-------------------------------------	-----

별첨② 고객정보 취급방침	113
---------------	-----

가나다 순 특약 색인

◆ 가입한 특약에 한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	105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89
특별조건부특약 약관	92
특정 신체부위 · 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약관	96

보험용어 해설

1. 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2.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3.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6. 보험료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이 결정됨

11.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12.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NHe편한암보험 |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주계약 약관

[1형(간편가입형), 2형(일반가입형)]

※ 이 계약은 1종(갱신형) 또는 2종(비갱신형) 중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해당 보증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 예시]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뉩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얼마인가요?

$$\text{단리계산법: } \frac{100\text{원}}{\text{원금}} + \frac{(100\text{원} \times 10\%)}{1\text{년차 이자}} + \frac{(100\text{원} \times 10\%)}{2\text{년차 이자}} = 120\text{원}$$

$$\text{복리계산법: } \frac{100\text{원}}{\text{원금}} + \frac{(100\text{원} \times 10\%)}{1\text{년차 이자}} + \frac{[100\text{원} + (100\text{원} \times 10\%)] \times 10\%}{2\text{년차 이자}} = 121\text{원}$$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1종(갱신형)의 경우 갱신계약은 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암보장개시일

- 1종(갱신형) :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그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2종(비갱신형)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라. 갱신일 : 1종(갱신형)에서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5. 보험료에 관한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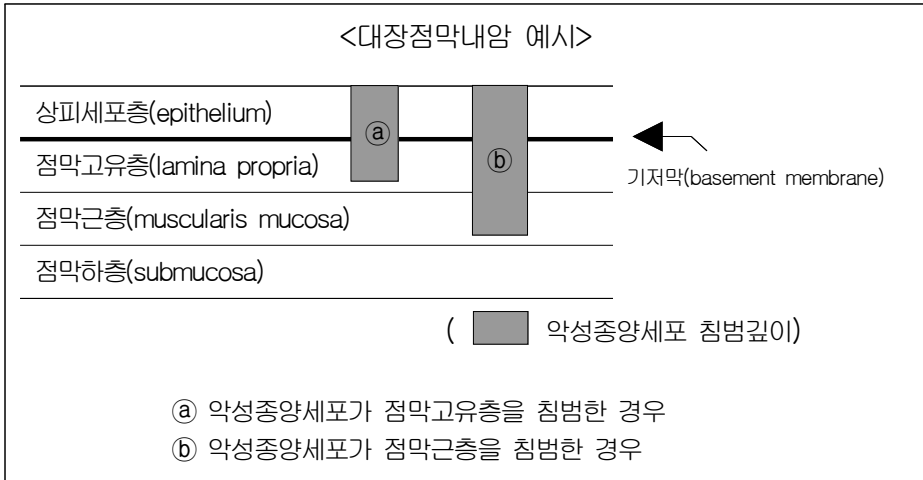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최종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서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은 이 계약에 있어서 ‘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제2항에서 정의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2. 제4항에서 정의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 3. 제5항에서 정의한 ‘대장점막내암’
 - 4.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 ②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계약에서 ‘중증 갑상선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수질성암(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계약에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중증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⑤ 이 계약에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

(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 ⑥ 이 계약에서 '9대고액암'은 제1항에서 정의한 '암' 중 '[별표 7] 9대고액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이 계약에서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은 제1항에서 정의한 '암' 중 '[별표 8] 유방암 분류표' 및 '[별표 9] 남녀생식기관련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이 계약에서 '일반암'은 제1항에서 정의한 '암'에서 제6항에서 정의한 '9대고액암' 및 제7항에서 정의한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⑨ '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⑩ '중증 갑상선암'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증 갑상선암'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⑪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⑫ 제9항 내지 제11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중증 갑상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약관용어 설명]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보니 다.

제4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서 ‘제자리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5] 제자리암의 신생물 분류 표 (대장점막내암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 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서 ‘경계성종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약관용어 설명]

- **경계성종양** :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중간 단계. 즉,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이 모호한 단계의 신생물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암진단보험금(1),(2),(3)을 합하여 암진단보험금이라 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9대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암진단보험금(1)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9대고액암’ 또는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암진단보험금(2)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9대고액암’, ‘일반암’ 또는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암진단보험금(3)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소액암진

단보험금 (다만,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확정 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 예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아래 [Case1] ~ [Case4]에서의 최초계약의 계약일은 1종(갱신형)에 해당하며, 2종(비갱신형)의 경우 계약일로 합니다.

[Case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후에 ‘9대고액암’으로 최초 ‘암’ 진단시 : **암진단보험금(1)+(2)+(3) 지급**

[Case2]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후에 ‘일반암’으로 최초 ‘암’ 진단시 : **암진단보험금(2)+(3) 지급**

[Case3]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최초 ‘암’ 진단시 : **암진단보험금(3) 지급**

구분	암진단보험금(1)		암진단보험금(2)		암진단보험금(3)		총 지급금액
	1년미만	1년이후	1년미만	1년이후	1년미만	1년이후	
Case 1	500만원	1,000만원	350만원	700만원	150만원	300만원	2,000만원
Case 2	해당없음		350만원	700만원	150만원	300만원	1,000만원
Case 3	해당없음		해당없음		150만원	300만원	300만원

[Case4]

- ①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최초 ‘암’ 진단시 : **암진단보험금(3) 지급**
- ② ‘①’이 발생한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이와 인과관계가 없는 ‘일반암’ 진단시 : **암진단보험금(2) 지급**
 ☞ ‘일반암’ 진단확정 이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보험금(3)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다시 지급하지 않음
- ③ ‘②’이 발생한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후에 이와 인과관계가 없는 ‘9대고액암’ 진단시 : **암진단보험금(1) 지급**
 ☞ ‘9대고액암’ 진단확정 이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및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보험금(2)와 (3)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다시 지급하지 않음

Case4	암진단보험금(1)		암진단보험금(2)		암진단보험금(3)		지급금액
	1년미만	1년이후	1년미만	1년이후	1년미만	1년이후	
①	해당없음		해당없음		150만원	300만원	150만원
②	해당없음		350만원	700만원	부지급		350만원
③	500만원	1,000만원	부지급		부지급		1,000만원
					총 지급금액		1,500만원

※ 상기 [case4]예시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됨을 가정함

제7조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아래 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13항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제1호의 1종(갱신형)에 한하여 적용되고, 제7항 내지 제8항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2종(비갱신형)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나머지 각 항은 1종(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의한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미 지급된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사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미 지급된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진단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⑥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 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⑧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에게 ‘암’으로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1),(2),(3)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진단보험금(1),(2),(3)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진단보험금(3)을 제외한 암진단보험금(2)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⑪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9대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진단보험금(2),(3)을 제외한 암진단보험금(1)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⑫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9대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진단보험금(3)을 제외한 암진단보험금(1),(2)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⑬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제24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해당 진단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⑭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전에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⑮ 제14항에 의한 진단 확정으로 제26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제26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우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에서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⑯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⑰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결과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약관용어 설명】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나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1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금 지급일 예시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10]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

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라 보험금 등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보험금입니다.
- **정당한 사유** : 불확정 개념으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이 때, ‘불확정 개념’은 법률요건에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게 서술된 것을 말합니다.

제12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암진단보험금’ 및 ‘소액암진단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예시]

보험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3년동안 매년 나누어 지급(3회)받는 경우

- 보험금 : 9천만원
- 지급사유발생일자 : 2023년 7월 1일
- 평균공시이율 : 2.0% 가정

실제 지급일자	나누어 지급할 금액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총 지급금액
2023년 7월 1일	3천만원	3천만원
2024년 7월 1일	3천만원	$3\text{천만원} \times (1 + \text{평균공시이율 } 2.0\%) = 30,600,000\text{원}$
2025년 7월 1일	3천만원	$3\text{천만원} \times (1 + \text{평균공시이율 } 2.0\%)^2 = 31,212,000\text{원}$
총액		91,812,000원

※ 평균공시이율 2.0%는 예시를 위한 이율이며, 실제 지급 금액은 이 계약의 평균 공시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제13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음성녹음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15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연대책임이란** : 2인 이상이 각각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되,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2인인 보험계약에서 각 계약자는 보험료 전부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2인 중 1인이 보험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하면 다른 1인도 그 1인이 납입한 금액만큼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합니다.

제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1종(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1종(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약관용어 설명]

● **반대증거** : 상대방이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1종(갱신형)의 경우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8조 【사기에 의한 계약】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취소** :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할 때 다음 조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1. 1종(갱신형) : 1형(간편가입형), 2형(일반가입형)
 2. 2종(비갱신형) : 1형(간편가입형), 2형(일반가입형)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부가된 특약을 포함합니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

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1종(갱신형)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 제24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⑦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1종(갱신형)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1종(갱신형)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⑧ 제7항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⑨ 제7항의 ‘청약일(1종(갱신형)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⑩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가입금액 제한** :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금 삭감** :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료 할증** :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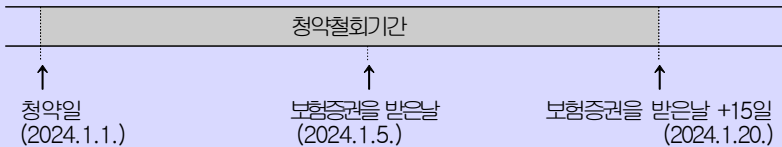
- **제1회 보험료** :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제20조 【청약의 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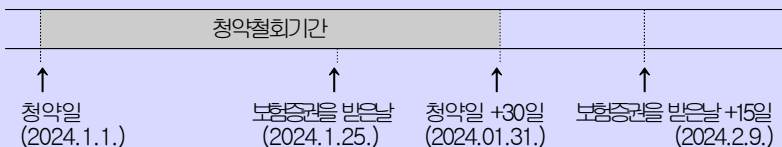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
 2.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철회기간 예시 】

【예시 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가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시 2】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가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지체 없이**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 이행을 지연하는 일이 없이

-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의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청약의 철회** :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 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 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
 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생략)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1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1.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2.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3.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4.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5.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6.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7.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8.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9.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지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지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납입면 제특약에 의해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전자서명법** : 디지털적인 수단으로 전자문서에 서명한 것을 도장을 찍은 종이 등 기존 서류에 대해 한 서명이나 사용인감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 규정한 법률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

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2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는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 ‘상품공시실’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위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한 경우(단, 1형(간편가입형)으로 가입시에 한함)

[약관용어 설명]

- **무효** :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주기 및 납입방법
 2. 보험가입금액(단, 보험가입금액의 감액만 가능)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관련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변경된 보험수익자는 변경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 시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 ①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1.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2.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하“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3.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4.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향후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4조 【계약의 갱신】

※ 아래 각 항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제1호의 1종(갱신형)을 선택했을 경우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① 계약자가 갱신 후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보험료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 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납입한 경우 이 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가 이 계약의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

- 지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2. 제26조(계약의 소멸)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3.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4. 피보험자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6항에서 정한 ‘9대고액암’ 또는 동조 제8항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연암」,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20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할 때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81세 이상 99세 이하인 경우 100세만기로 최종 갱신합니다.
 - ④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⑤ 갱신계약은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⑥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재계산하고,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 내용을 이 계약의 해당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제2항에 따라 갱신이 제한된 경우 그 제한 사유
 2.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3. 제6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 내용 등
 - ⑧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중요사항 변경내역,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⑨ 제8항에 따라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을 안내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 90일 이내에 그 특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⑪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⑫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안내 및 설명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⑬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계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제25조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금 및 보험료 변경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정산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나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보험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 **연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연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예) 계약일 : 2020년 2월 29일

- 연계약해당일 : 매년 2월 29일이 연계약해당일이나, 2021년 2월 등 해당 월의 계약해당일(29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2021년 2월 28일)을 연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93년 10월 2일

- | | |
|---|---|
| <p>예1) 2019년 4월 13일에 가입할 경우</p> <p>2019년 4월 13일</p> <p>- 1993년 10월 2일</p> <p>만 25년 6개월 11일</p> <p>⇒ 보험나이 26세</p> | <p>예2) 2019년 11월 13일에 가입할 경우</p> <p>2019년 11월 13일</p> <p>- 1993년 10월 2일</p> <p>만 26년 1개월 11일</p> <p>⇒ 보험나이 26세</p> |
|---|---|

제26조 【계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지급절차는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과 암보장개시일은 서로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 1월 1일에 최초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개시일 : 2019년 1월 1일

암보장개시일 : 2019년 4월 1일

(2019년 1월 1일 + 90일 = 2019년 4월 1일)

제28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9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7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약관용어 설명】

- **자동대출납입** : 보험료를 제때에 내기 곤란한 경우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처리해 주는 서비스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계약 체결시점 또는 이후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장)을 발송하고, 납입최고서 도달여부는 제13조(주소변경통지) 제2항에 따릅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수익자가 특정한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일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

- ① ~ ② (생략)
- ③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동화된 전자적 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 설명장치를 활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보험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 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경우,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직접 계약자의 질의 또는 요청 등에 즉시 응할 수 있을 것
 3.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질문 또는 설명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
 4.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이하 생략)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이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 성립) 제3항, 제4항 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효력회복) 청약 포함)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부활(효력회복)** :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

제32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강제집행** :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
- **담보권실행** :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담보권자가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절차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범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제척기간** :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존속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34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키거나 그 발생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증가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6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0]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3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7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계약대출** :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하여 받는 대출

제38조 【배당금의 지급】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9조 【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해당 자료의 유형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3항 및 제4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의 요구·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분쟁의 조정)

- 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 ⑥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 ⑦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 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금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4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 동안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 **소멸시효 예시** :
 - 2015년 4월 10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제42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2조(신의성실)】

-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43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안내 자료** :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및 고객제안서 등 회사의 승인번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제4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약관용어 설명]

- **‘책임 있는 사유’** :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5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여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 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46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7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예금보험**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1종(갱신형) : 1형(간편가입형)/2형(일반가입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1년 미만	1년 이후
암진단 보험금(1)		‘9대고액암’ (다만,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500만원	1,000만원
암진단 보험금(2)	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중 암보 장개시일 이후 에 ‘암’으로 진 단확정 되었을 때	‘9대고액암’ 또는 ‘일반암’ (다만,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350만원	700만원
암진단 보험금(3)		‘9대고액암’, ‘일반암’ 또 는 「유방암 또는 남녀생 식기관관련암」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50만원	300만원
소액암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만원	200만원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미 지

- 급된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지급사유인 경우 (이미 지급된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6.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7.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 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이 계약에서 '암'이란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때, '암'에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9. 이 계약에서 '9대고액암'은 '암' 중 '[별표 7] 9대고액암 분류표'에서 정한 골(뼈)암, 뇌암, 백혈병, 식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간암, 폐암 등을 말하며,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은 '암' 중 '[별표 8] 유방암 분류표' 및 '[별표 9] 남녀생식기관련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0. '일반암'이란 '암'에서 '9대고액암' 및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11. 피보험자에게 '암'으로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1),(2),(3) 중에서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진단보험금(1),(2),(3)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진단보험금(3)을 제외한 암진단보험금(2)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9대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진단보험금(2),(3)을 제외한 암진단보험금(1)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9대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진단보험금(3)을 제외한 암진단보험금(1),(2)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5. 소액암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6.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7.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8.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9대고액암' 또는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19.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제24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해당 진단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거나 '보장개시일'전에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1. 제20호에 의한 진단 확정으로 제26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제26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우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에서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2종(비갱신형) : 1형(간편가입형)/2형(일반가입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1년 미만	1년 이후
암진단 보험금(1)		‘9대고액암’ (다만,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500만원	1,000만원
암진단 보험금(2)	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중 암보 장개시일 이후 에 ‘암’으로 진 단확정 되었을 때	‘9대고액암’ 또는 ‘일반암’ (다만,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350만원	700만원
암진단 보험금(3)		‘9대고액암’, ‘일반암’ 또는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50만원	300만원
소액암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만원	200만원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턴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4.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5. 이 계약에서 ‘암’이란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때, ‘암’에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이 계약에서 ‘9대고액암’은 ‘암’ 중 ‘[별표 7] 9대고액암 분류표’에서 정한 골(뼈)암, 뇌암, 백혈병, 식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간암, 폐암 등을 말하며, 「유방암 또는 남

녀생식기관관련암」은 ‘암’ 중 ‘[별표 8] 유방암 분류표’ 및 ‘[별표 9] 남녀생식기관관련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7. ‘일반암’이란 ‘암’에서 ‘9대고액암’ 및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관련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8. 피보험자에게 ‘암’으로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1),(2),(3) 중에서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진단보험금(1),(2),(3)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관련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진단보험금(3)을 제외한 암진단보험금(2)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9대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진단보험금(2),(3)을 제외한 암진단보험금(1)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관련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9대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진단보험금(3)을 제외한 암진단보험금(1),(2)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2. 소액암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3.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4.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전에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6. 제15호에 의한 진단 확정으로 제26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제26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우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에서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주3)}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3 ^{주4)}
13. 부신의 악성신생물	C74
1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C75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6.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8.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9.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20.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2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2. 골수성유증	D47.4
2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의 경우 이 계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암'에서 제외됩니다.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의 경우 이 계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은 '암'에서 제외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4

- 주)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3

주)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5]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제외)

-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주2)}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 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 주)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의 경우 이 계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경계성종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주2)}	D47 (D47.1, D47.3, D47.4, D47.5 제외)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주)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경계성종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만성 골수증식 질환(D47.1), 본대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성유증(D47.4), 만성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증후군)(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7]

9대고액암 분류표

-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9대고액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9대고액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5
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C22
3. 담낭의 악성 신생물	C23
4.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24
5. 췌장의 악성 신생물	C25
6.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기관의 악성신생물	C33
-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C34
7.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1
8.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 수막의 악성신생물	C70
- 뇌의 악성신생물	C71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72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호지킨림프종	C81
- 소포성림프종	C82
- 비소포성 림프종	C83
-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 T/NK-세포 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88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C90
- 림프성 백혈병	C91
- 골수성 백혈병	C92
- 단핵구성 백혈병	C93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96
-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9대고액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성 적혈구 증가증(분류번호 D45),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분류번호 D47.3) 및 골수섬유증(분류번호 D47.4)은 만성 골수증식 질환(분류번호 D47.1)에서 제외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8]

유방암 분류표

-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유방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유방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 주)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유방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9]

남녀생식기관련암 분류표

-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남녀생식기관련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음경의 악성 신생물	C60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C61
	고환의 악성 신생물	C62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3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1
	질의 악성 신생물	C52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5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7
	태반의 악성 신생물	C58

주)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남녀생식기관련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0]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1조 제2항 및 제36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암진단보험금 및 소액암진단보험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36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제41조(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1 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는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및 보험계약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2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계약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제 2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합니다.

제4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 3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등 적용대상 주계약 및 특약 약관에서 정한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4 관 기타사항

제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특별조건부특약 약관

제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부가됩니다.(이하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된 보험계약 또는 특약을 '해당계약'이라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주피보험자 : 피보험자 2명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약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해당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해당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해당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4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해당계약의 피보험자(해당계약의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5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6조 【특약부가의 조건】

① 이 특약을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표준체

신체적 또는 도덕적 위험 등 여러 가지로 보아 뚜렷한 결점이 없어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의 할증 및 보험금의 감액 등이 없는 정해진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부터 회사에서 정하는 삭감기간 내에 해당계약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 약관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가. 계단식감액법

경과기간	기준	삭감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해당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	-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	-	-	80%	60%
4년이상 5년미만		-	-	-	-	80%

나. 평준식 보험금감액법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전 삭감기간 동안 50%이상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동일한 보험금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해당계약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나이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연령간의 차이를 연증수라 합니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의 위험지수가 실제 n세 높은 연령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년증”이라 칭하고 n세 높은 연령의 표준체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4. 나이가산법(또는 할증보험료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해당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 및 해당계약 약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종목 및 보험기간의 변경
 2.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3. 감액완납보험 또는 연장정기보험으로의 변경

감액완납보험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만 감액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③ 계약자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이 특약도 동일 내용으로 감액하여 드립니다. 이때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제 3 관 보험료의 납입

제9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당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0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절차에 따라서 해당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9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을 따릅니다.

제 4 관 특약의 해지

제1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해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계약과 함께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을 단독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계약의 해지로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12조 【해당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계약 약관을 적용합니다.

특정 신체부위 · 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약관

제1조 【특약면책조건의 내용】

- ① 이 보험계약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된 보험계약 또는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이하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된 보험계약 또는 특약은 “해당계약”이라 합니다).
1. [별표1] “특정부위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2. [별표2] “특정질병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면책기간은 특정질병 또는 특정부위의 상태에 따라 「1개월부터 5년」 또는 「해당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별도의 계약사정 없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 면책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계약의 보험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또한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 기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보험계약(이하 「유사계약」이라 합니다)이 계약 청약일 현재 유지중이거나, 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종료일 이내에서 계약의 면책기간을 적용하고, 유사계약에서 정한 질병과 동일하거나 축소된 범위로 계약의 부담보 설정 범위를 정하며, 유사계약이 다수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을 적용합니다. 단, 유사계약 청약일 이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질병과 관련한 새로운 위험(재진단·치료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장이 추가(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등 보장 범위의 변경 또는 확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해당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만,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해([별첨1]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 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고,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계약 청약일 현재 면책기간을 「해당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유사계약이 유지중이거나, 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 청약일과 계약 청약일 사이에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의 청약일은 유사계약의 청약일로 봅니다.
- ⑤ 제4항 제4호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⑥ 제4항 제4호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해당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제3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청약일로 하여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

합니다.

- ⑩ 제1항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해당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계약자의 청약(또는 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해당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범위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된 경우 또는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있게 입증된 경우 등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 혹은 질병 등으로 제한합니다.
- ③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는 회사는 부담보 설정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⑤ 해당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이 특약도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⑥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약 제1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약 제1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3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해당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해당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4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해당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특 정 부 위 분 류 표

분류번호	특정부위의 명칭
1	위, 십이지장
2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3	대장(맹장, 직장 제외)
4	직장
5	항문
6	간
7	담낭(쓸개) 및 담관
8	췌장
9	비장
10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11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12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13	식도
14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15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 포함]
16	안구 및 안구부속기 [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17	신장
18	부신
19	요관, 방광 및 요도
20	음경
21	질 및 외음부
22	전립선
23	유방(유선 포함)
24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25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26	난소 및 난관
27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28	갑상선
29	부갑상선
30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분류번호	특정부위의 명칭
31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32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33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34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35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36	왼쪽 어깨
37	오른쪽 어깨
38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39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40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41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42	왼쪽 고관절
43	오른쪽 고관절
44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45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46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47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48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49	쇄골
50	늑골(갈비뼈)

[별표2]

특 정 질 병 분 류 표

-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병 명	분류번호	세부내용
심장질환	I00~I02 I05~I09 I20~I25 I26~I28 I30~I52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허혈심장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뇌혈관 질환	I60~I69	뇌혈관 질환
당뇨병	E10~E14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I10~ I15	고혈압성 질환
결 핵	A15~A19, B90	결핵, 결핵의 휴유증
담석증	K 80	담석증
요로결석 증	N 20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 21	하부 요로의 결석
	N 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N 23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임신중독 증	O 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 12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 부종 및 단백뇨
	O 13	임신[임신-유발] 고혈압
	O 14	전자간
	O 15	자간
골관절증 및 류마티스 관절염	M 05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M 06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M 08	연소성 관절염
	M 15	다발관절증

병명	분류번호	세부내용
골관절증 및 류마티스 관절염	M 16	고관절증
	M 17	무릎관절증
	M 18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 19	기타 관절증
통풍	E 79	퓨린 및 피리미딘의 대사장애
	M 10	통풍
척추만곡증	M 40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M 41	척주측만증
고지혈증	E 78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사시	H 49	마비성 사시
	H 50	기타 사시
	H 51	양안운동의 기타 장애
백내장	H 25	노년백내장
	H 26	기타 백내장
	H 27	수정체의 기타 장애
하지정맥류 (정맥염 포함)	I 80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I 83	하지의 정맥류
	I 87	정맥의 기타 장애
탈장 (음낭수종 포함)	K 40	사타구니탈장
	K 41	대퇴탈장
	K 42	배꼽탈장
	K 43	복벽탈장
	K 44	횡경막탈장
	K 45	기타 복부탈장
	K 46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N 43	음낭수종 및 정맥류

병명	분류번호	세부내용
유산	N 96	습관적 유산자
	O 00	자궁외 임신
	O 01	포상기태
	O 02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O 03	자연 유산
	O 04	의학적 유산
	O 05	기타 유산
	O 06	상세불명의 유산
	O 07	시도된 유산의 실패
	O 08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 임신에 따른 합병증
	O 20	초기임신중 출혈
복막의 질환	K 65	복막염
	K 66	복막의 기타 장애
	K 67	달리 분류된 감염성 질환에서의 복막의 장애
골반염	N 70	난관염 및 난소염
	N 71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N 72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N 73	기타 여성골반염증질환
	N 7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골반염증장애
골다공증	M 80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 81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 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천식	J 45	천식
	J 46	천식지속 상태
자궁내막증	N 80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D 25	자궁의 평활근종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4(보험료의 세액공제)】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로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 ②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 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의(장애인의 범위)]

- ①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 【제출서류】

-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

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6월1일~2019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전환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 【해당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별첨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고객권리 안내문

금융서비스 이용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고객은 상품소개나 제휴·부가서비스 등의 목적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상품·서비스 정보, 제휴 및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1. 본인 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당사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경영관리 목적 또는 반복적인 업무위탁 등 제외] 이용내역, 제공내역 등을 알려주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당사 홈페이지(<https://www.nhlife.co.kr>), 고객센터(1544-4000), 영업점

2.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당사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당사 홈페이지(<https://www.nhlife.co.kr>), 고객센터(1544-4000), 영업점

3. 본인 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 철회권 및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청구(Do-Not- Call)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신용도 평가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상품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지하도록 청구(Do-Not-Call)할 수 있습니다.

- 연락중지 신청방법 : 두넛콜 홈페이지(<http://www.donotcall.or.kr>)
- 동의철회 신청방법 : 당사 홈페이지(<https://www.nhlife.co.kr>), 고객센터(1544-4000), 영업점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서 제출

※ 신청제한

신청자는 신용정보주체에 한함(배우자 등 가족, 제3자는 신청금지)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본인 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고객은 제공 또는 열람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정정·삭제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적의 조치한 후 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당사 홈페이지(<https://www.nhlife.co.kr>), 고객센터(1544-4000), 영업점
- 서식 다운로드

5.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및 본인 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신용평가 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본인 정보를 신용조회 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CE신용평가정보(주): 02-2122-4000, www.nicecredit.com
서울신용평가정보(주): 02-1577-1006, 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708-6000, www.koreacb.com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www.klia.or.kr

6.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사의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업무 담당자 또는 협회·금융감독원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신용정보관리·보호인 02-3786-8685

당사 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 담당자 : 02-3786-8685

생명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02-2262-6600, www.klia.or.kr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국번없이)1332, <https://www.fss.or.kr>

고객정보 취급방침

NH농협금융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5.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NH농협금융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
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예금(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
설대여 등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
 - 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이나 거짓, 속임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
 - 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
보로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고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
할 수 있는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
보,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
여 매매 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
당하는 정보
 -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마.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
의 평균 거래회수

II. 금융지주회사 등의 상호 및 업종

NH농협금융의 회사는 NH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금융지주회사), NH농협은행 주식회사(은행), NH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생명보험사),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손해보험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금융투자업), NH-Amundi자산운용 주식회사(금융투자업),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여신전문금융업), NH선물 주식회사(금융투자업), NH저축은행 주식회사(상호금융업), NH농협리츠운용 주식회사(부동산투자자문업), NH벤처투자 주식회사(금융투자업),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금융투자업)입니다.

III. 고객정보의 제공처

NH농협금융의 회사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NH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 NH농협은행 주식회사, NH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NH-Amundi자산운용 주식회사,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 NH선물 주식회사, NH저축은행 주식회사, NH농협리츠운용 주식회사, NH벤처투자 주식회사,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입니다.

IV.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NH농협금융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라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1.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2.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3.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4.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5.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재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의 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유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통지하여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강화하였습니다.
8.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절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NH농협은행	고객정보관리인
NH농협생명	고객정보관리인	NH농협손해보험	고객정보관리인
NH투자증권	고객정보관리인	NH-Amundi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NH농협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NH선물	고객정보관리인
NH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NH벤처투자	고객정보관리인
NH농협리츠운용	고객정보관리인	NH헤지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MEMO



MEMO



MEMO



MEMO